



(주)한맥기술 어천-공주(4차)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2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



수신 건설본부장(도로건설과장)

제목 실정보고[지적확정측량비 사용계획 보고, 어천-공주(4차)]

1. 어천제2025-055(2025. 4. 1.)호와 관련문서입니다.
2. 「어천-공주(4차) 지방도 확포장공사」 시행 중 "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"에 의거하여 반영된 '지적확정측량비'에 대하여 현재 단가 및 실수량을 반영하여 시행 하고자 붙임과 같이 실정보고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 임 1. 검토의견서 1부.
2. 시공사 실정보 공문 1부. 끝.

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송세화



제출자 2025. 04. 01.
송세화

시행 한맥어천제2025-53 (2025. 04. 01.) 접수

우 325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부탕골길 50 어천~공주등 2개지구 건,
설사업단

전화번호 041-855-7391 팩스번호 041-855-7392 / swgamri1@hanmail.net / 비공개(6)

- 어천-공주(4차) 지방도 확.포장공사 -
**지적확정측량비 사용계획
실정보고**

『어천-공주(4차) 지방도 확.포장공사』 시공 중 「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하여 P.S.단가로 반영된 지적확정측량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행일 현재 고시된 단가 및 실수량을 적용하여 시행 하고자 함.

2025. 4.



충청남도 건설본부
(도로1팀)

어천-공주(4차) 지방도 확·포장공사 지적확정측량비 사용계획 실정보고

I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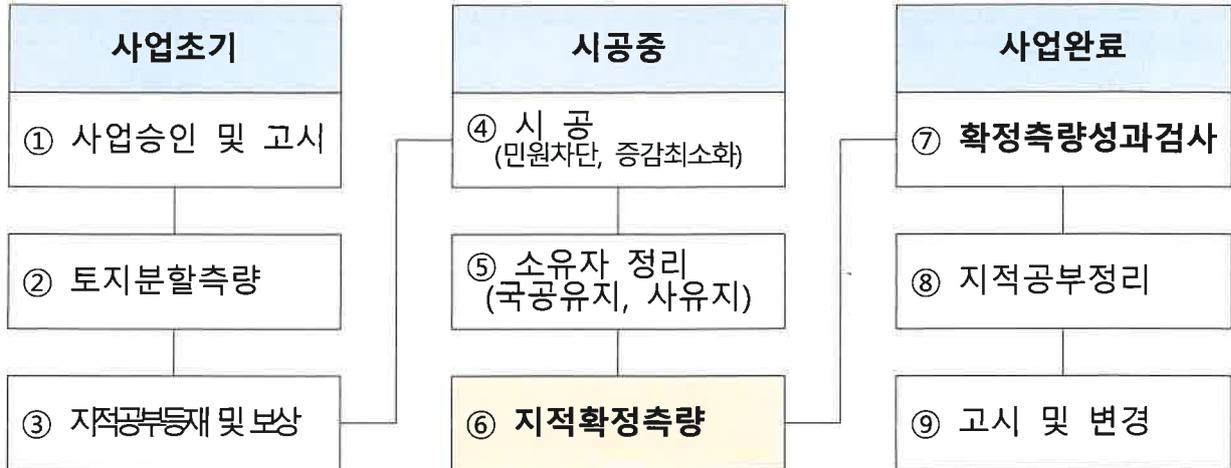
『어천-공주(4차) 지방도 확·포장공사』 시공 중 「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하여 P.S.단가로 반영된 지적확정측량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행일 현재 고시된 단가 및 실수량을 적용하여 시행 하고자 함.

II 관련근거

구 분	관련법 내용	비고
지적확정 측량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, 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13. 그밖의 국토부장관리 고시하는 요건 : 10,000㎡ 이상의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(지방도 포함) 	
지적측량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. ②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에 고시하여야한다. 	
대상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(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3조 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	
지적확정측량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로.철도 지적확정측량 매뉴얼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부속물과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로 구성 -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(지선을 포함)와 관련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과 그 부속물이 속한 토지가 지적확정측량 대상 	

III 업무절차 및 대상면적

□ 지적측량 업무 FLOW



□ 도로구역결정(변경) 내용

종류	노선 번호	노선명	위치	면적	기점	종점	총연장
지방도	제625호	세도 ~ 우성	공주시 우성면	184,115.5㎡	청양군 목면 신흥리 산1	공주시우성면 평목리 24-1	3.950 km

IV 기준에 따른 소요비용 검토

1. 수량 반영

종목별	규격	단위	수량	산출근거
지적도근점 측량	GNSS	점	13	3,950m(연장) / 300m(기준)
지적도근점 매설	황동	점	13	3,950m(연장) / 300m(기준)
지적확정 측량	10만㎡ 이하	㎡	100,000	토지 편입조서의 대장 면적 반영 231필지, 184,115.5㎡ (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 - 2020.11.10.)
	10만㎡~50만㎡	㎡	84,115.5	
경계점 표지 설치비	목재	EA	1,000	용지도면의 도로구역선 정점(CAD 산출)

2. 단가 적용

종목별	규격	단위	단가	적용근거	비고
지적도근점 측량	GNSS	점	104,000	군지역 고시단가	고시
지적도근점 매설	황동	점	37,825	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	예규
지적확정 측량	10만㎡ 이하	㎡	449.2	군지역 고시단가 898.4의 50%	고시
	10만㎡~50만㎡	㎡	405.5	군지역 고시단가 811.0의 50%	
경계점 표지 설치비	목재	EA	8,472	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	예규

※ 2025년 국토교통부 고시(제2024-865호)단가 및 국토교통부 예규(제339호) 기준 적용

3. 산출금액

공종	규격	단위	수량	단가	금액	비고
지적도근점 측량	GNSS	점	13	104,000	1,352,000	
지적도근점 매설	황동	점	13	37,825	491,733	
지적확정 측량	10만㎡ 이하	㎡	100,000	449.2	44,920,000	
	10만㎡~50만㎡	㎡	84,115.5	405.5	34,108,835	
경계점 표지 설치비	목재	EA	1,000	8,472	8,471,626	
합계					89,344,194	

V 설계내역 적용 검토

1. 견적비교

구분	견적가격 (원, 부가세 별도)			비고
	A사	B사	C사	
지적확정측량비	89,300,000	93,680,000	96,420,000	
적용	◎			

2. 신규비목 단가적용

신규비목	규격	단위	품셈단가	신규단가			적용단가	비고
				견적가	적용가	적용율		
#1. 지적확정측량비		식	89,344,192	89,300,000	89,300,000	100 %	89,300,000 (P S×100%)	

VI 수량 및 금액 변경현황

1. 주요수량 및 금액 현황

(단위 : 천원, 직접공사비)

공종	단위	당초		변경		증△감		비고
	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
지적확정측량비	PS	1	60,600	1	89,300	-	28,700	

2. 공사비 증·감 현황

(단위 : 원)

공종		당초	변경	증△감	비고
도 급 액	직접공사비	60,600,000	89,300,000	28,700,000	
	제경비	6,060,000	8,930,000	2,870,000	
	제경비제외공종	-	-	-	
	소계	66,660,000	98,230,000	31,570,000	
관급자재비		-	-	-	
총공사비		66,660,000	98,230,000	31,570,000	

VII

검토결과

- 『어천-공주(4차) 지방도 확·포장공사』의 P.S.단가로 반영된 지적확정측량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행일 현재 고시된 단가 및 실수량을 적용한 변경 반영 요청 건으로써,
- 「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 및 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량 및 적용 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, 견적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2025. 4.

어천-공주(4차) 지방도 확포장공사
책임기술인 송 세 화 (인)

